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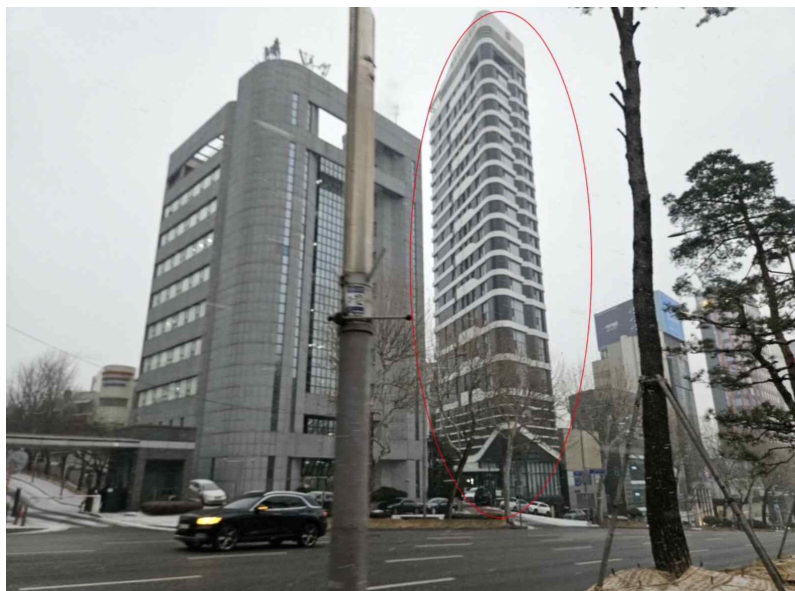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유물건
(2025타경104735)

의뢰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세경

감정서번호 : 202601-401942-602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진성감정평가사사무소

TEL. 070-7804-7848

FAX. 0505-182-3166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이 해 원 (인)

감정평가액	오십구억칠천만원정(₩5,970,000,000.-)					
의 퇴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세경		감정평가목적	법원경매		
제 출 처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8계		기 준 가 치	시장가치		
소 유 자 (대상업체명)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2025타경104735)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 근 거	귀 제시목록		기 준 시 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기 타 참고사항	-		2026.01.16	2026.01.09 ~2026.01.16	2026.01.18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 액
	아파트	2개호	아파트	2개호	-	5,970,000,000
	합 계					₩5,970,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경기고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삼성브르넨 제8층 801호 및 제14층 제1402호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매를 위한 감정평가임.

2. 감정평가근거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제반 관계법령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따라 평가하였음.

II. 개요

1. 대상물건의 개요

(1) 기호1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90				
건물명, 층, 호수	삼성브르넨 제8층 제801호				
용도	아파트		사용승인일	2021.10.19.	
면적	전유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대지권면적(㎡)
	지상8층	41.5	35.44	99.31	13.8783
	지상9층	22.37			

※ 공용면적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공용부분 구분상의‘주’부분을 합산한 면적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기호2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90				
건물명, 층, 호수	삼성브르넨 제14층 제1402호				
용 도	아파트		사용승인일	2021.10.19.	
면 적	전유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대지권면적(㎡)
	지상14층	34.04	28.57	78.43	10.9611
	지상15층	15.82			

2.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6년 1월 16일임.

3.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본건 실지조사 실시기간은 2026년 1월 9일부터 2026년 1월 16일까지이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거 실지조사를 통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Ⅲ.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1.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하 "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을 말하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은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본건 감정평가의 기준가치로 결정하였음.

2.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조건에 대한 검토

구분소유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법원 요청에 의거 대상물건의 평가가격을 토지와 건물로 배분하여 감정평가명세표에 표기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V.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1. 관련규정의 검토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 (감정평가방식)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 ①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감정평가업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감정평가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 (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업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 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대상물건에 적용한 주된 방법과 다른 감정평가방법

- (1)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시산가액을 산정한 후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평가선례 등 참고가격자료를 통해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 (2)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되,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였음.

3. 일괄·구분·부분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대상물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의거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그 밖의 사항

- (1) 구분소유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법원 요청에 의거 대상물건의 평가가격을 토지와 건물로 배분하여 표기하되, 가격배분은 한국부동산연구원 발행 공동주택의 구분평가지 토지·건물 배분비율에 관한 연구 논문 등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 및 대상물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배분하였음.
- (2) 본건 내부구조 및 이용상황은 통상적인 관리·이용상태를 전제로 집합건축물대장등본상 현황도 및 외부 관찰된 사항, 탐문 조사내용 등을 종합하여 입찰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시하였는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입찰시 확인하시기 바람.
- (3) 본건의 호별 위치는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 현황도 및 현장 실지조사, 탐문조사, 외부 관찰 및 현관 출입문의 표식 등을 근거로 표시하였으며, 내부구조도는 현장 조사시 폐문 및 점유자,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인하여 건축물 현황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는바, 실제 내부 구조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입찰시 확인하시기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V.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개요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함.

2. 거래사례의 선정

동일건물 내 거래사례로 대상물건과 물적 유사성 및 비교 가능성이 높은 거래사례<#1>을 선정함.

사례	소재지	건물명	층/호수	전유면적 (㎡)	거래금액 (원)	거래시점
#1	삼성동 90	삼성브르넨	10층/ ○○호	49.86	2,230,000,000	2024.10.03

※ 실거래가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KAIS 부동산정보체계)

3. 사정보정

본건에 적용할 상기의 거래사례는 거래당시 부동산시장의 가격수준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에 정상적으로 거래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사정보정치는 없음. (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시점수정

- 통계법 제17조에 의하여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월간 주택가격지수를 활용하여 산정함.

- 시점수정치 산정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24.10.03~26.01.1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 거래시점 : 2024.10.03, 2024년09월 지수를 적용 함

○ 기준시점 : 2026.01.16, 2025년12월 지수를 적용 함

2024.10.03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4년09월) : 94.7

2026.01.16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5년12월) : 110.8

○ 시점수정치 : $110.8/94.7 \approx 1.17001$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가치형성요인 비교

◇ 기호1 / 거래사례 #1

구분		격차율	비고
조건	세항목	(대상/사례)	
단지 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1.00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교육시설의 배치 등 단지외부요인 상호 대등함.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교육시설 등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단지 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1.00	대상과 사례는 동일 건물 내에 소재하여 단지내부요인 동일함.
	단지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대형·중형·소형)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등		
호별요인	층별 효용	0.99	층별 효용 등 호별요인 다소 열세함.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대등함.
누 계		0.99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기호2 / 거래사례 #1

구분		격차율	비고
조건	세항목	(대상/사례)	
단지 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1.00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교육시설의 배치 등 단지외부요인 상호 대등함.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교육시설 등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단지 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1.00	대상과 사례는 동일 건물 내에 소재하여 단지내부요인 동일함.
	단지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대형·중형·소형)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등		
호별요인	층별 효용	1.02	층별 효용 등 호별요인 다소 우세함.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대등함.
누 계		1.02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기호	거래사례	사정 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면적비교	시산가격
1	2,230,000,000	1.00	1.17001	0.990	63.87/49.86	3,310,000,000
2	2,230,000,000	1.00	1.17001	1.020	49.86/49.86	2,660,000,000

※ 시산가격은 백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하였음.

7. 가격참고자료

소재지	건물명	층/호수	전유면적 (㎡)	평가 목적	감정평가액 (원)	기준시점
삼성동 90	삼성브르넨	10층/ ○○호	63.87	경매	3,350,000,000	2025.11.25
삼성동 90	삼성브르넨	16층/ ○○호	49.86	경매	2,660,000,000	2025.11.18
삼성동 90	삼성브르넨	12층/ ○○호	63.87	경매	3,270,000,000	2025.09.12

[출처: 한국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정보]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VI. 감정평가액의 결정

1. 감정평가액의 결정 의견

본건은 경매목적의 감정평가로서 관련법규와 평가목적에 부합하도록 평가하였으며 상기 가격참고자료에 의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종합참작하여 비준가격으로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함.

2. 감정평가액의 결정

기호	건물명	층/호수	전유면적 (㎡)	감정평가액 (원)
1	삼성브르넨	8층 제801호	63.87	3,310,000,000
2	삼성브르넨	14층 제1402호	49.86	2,660,000,000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22길 2	90 삼성 브르넨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 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20층 지하1층 지하2층 지하3층 지하4층 1층 2~4층 각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11층 12층 13층 14층 15층 16층 17층 18층 19층 20층 옥탑	200.03 196.3 199.24 209.84 106.2 148.57 104.73 144.64 64.39 144.64 64.39 144.64 64.39 144.64 64.39 138.83 134.74 2.49 28.3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제8층 제801호 8층 9층	41.5 22.37	63.87	3,310,000,000	비준가격 (공용면적)
	대지권의 토지의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목적인 표시	토지의	표시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2	삼성동	90	대	일반상업, 2종일주	418.2		배분내역 2,317,000,000 993,000,000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	13.8783			
	대지권의	비율		1.	418.2×----	13.8783		
					418.2			
						토지·건물 토 지 : 건 물 :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90	아파트,	철근콘크리트구조				
	강남구	삼성	오피스텔,	(철근)				
	삼성동	브르넨	근린	콘크리트지붕				
	[도로명주소]		생활시설	20층				
	서울특별시			지하1층	200.03			
	강남구			지하2층	196.3			
	영동대로			지하3층	199.24			
	122길 2			지하4층	209.84			
				1층	106.2			
				2~4층 각층	148.57			
				5층	104.73			
				6층	144.64			
				7층	64.39			
				8층	144.64			
				9층	64.39			
				10층	144.64			
				11층	64.39			
				12층	144.64			
				13층	64.39			
				14층	144.64			
				15층	64.39			
				16층	144.64			
				17층	64.39			
				18층	138.83			
				19층	134.74			
				20층	2.49			
				옥탑	28.32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제14층 제1402호 14층 15층	34.04 15.82	49.86	2,660,000,000	비준가격 (공용면적)
	대지권의 토지의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목적인 표시	토지의	표시				
		90	대	일반상업, 2종일주	418.2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	10.9611			
	대지권의	비율		1.	418.2×---- 418.2	10.9611		
						토지·건물 토 지 : 건 물 :	배분내역 1,862,000,000 798,000,000	
	합 계						₩5,970,000,000.-	
			이	하	여	백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경기고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상업용건물, 업무용건물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수도권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 수도권지하철 7호선 '청담역' 및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4층/지상20층 건물 내
제8층 801호(기호1)
제14층 1402호(기호2)로서
(사용승인일 2021년 10월 19일),
외벽 : 외장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붙임 등
창호 : 샷시창호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별첨 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급배수 및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화재자동탐지 및 경보설비, 소화전설비, 도시가스공급설비,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 토지로서 아파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서측으로 간선도로인 영동대로와 북측으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국제교류복합지구), 광로3류(폭 40m~50m) (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1.~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건축선<추가기재>건축선지정(도로경계선에서3미터후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구역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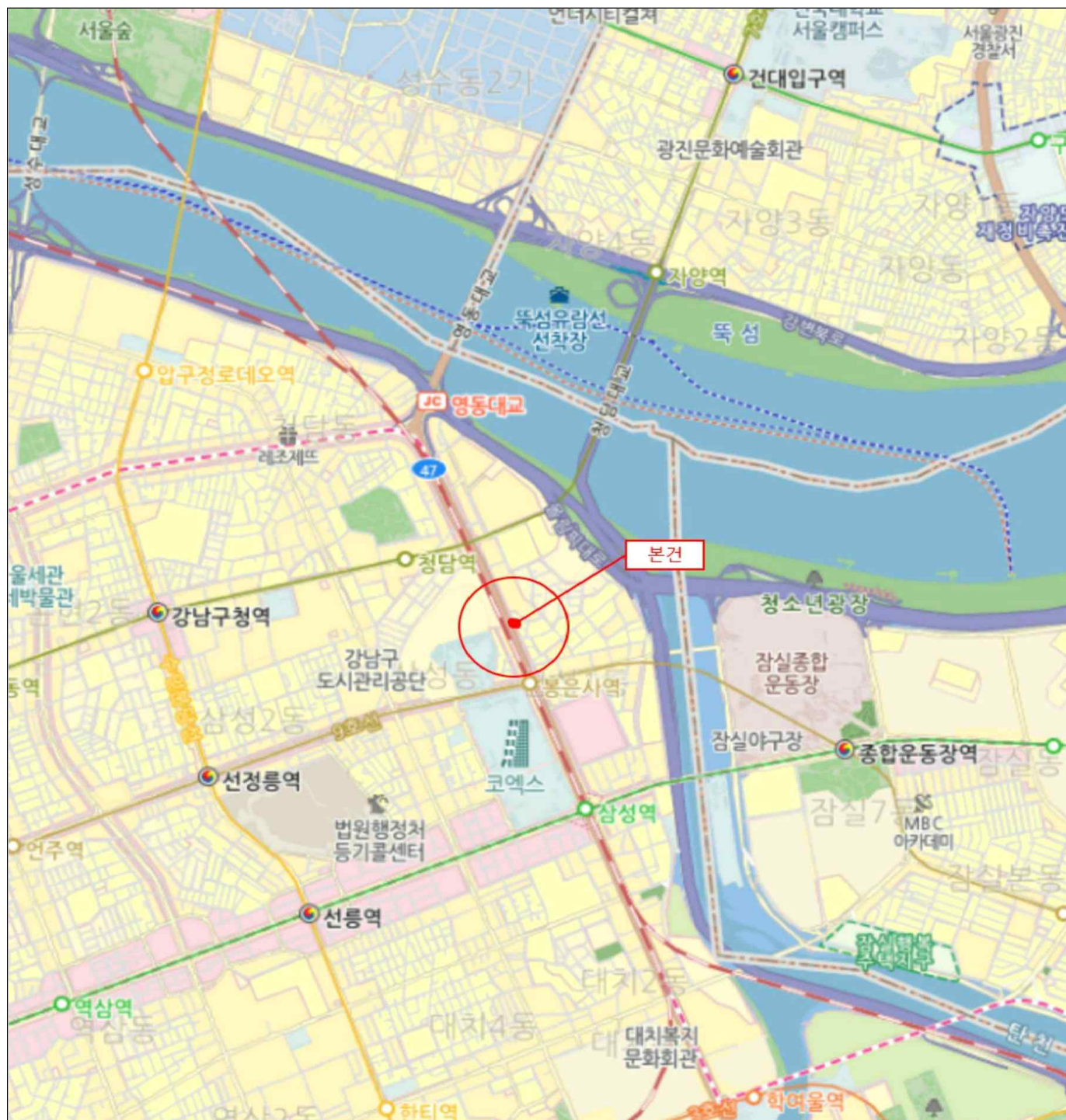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광역위치도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90 삼성브르넨 8층 801호 및 14층 1402호



위 치 도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90 삼성브르넨 8층 801호 및 14층 1402호



내 부 구 조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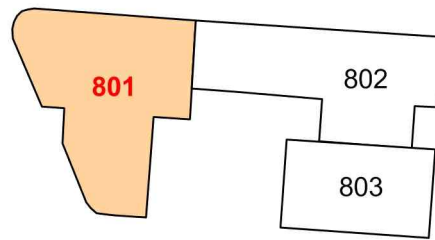


소 재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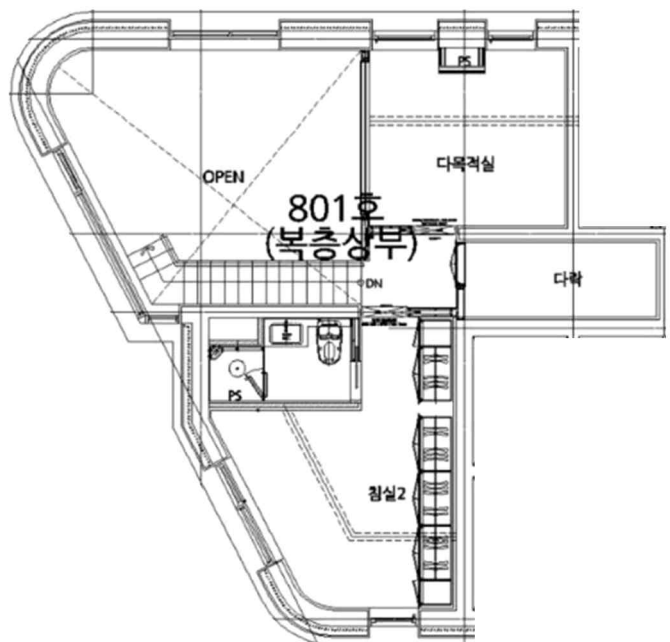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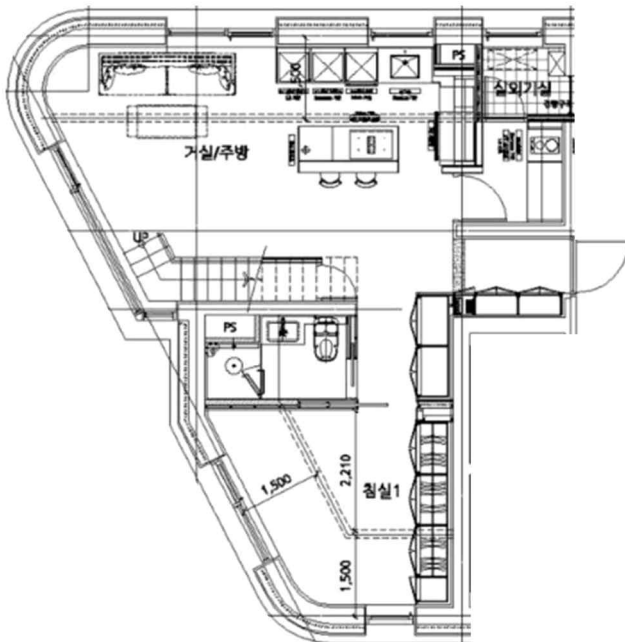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90 삼성브르넨 8층 801호 및 14층 1402호

4

NO SCALE



호별배치도



표준적인 내부구조도

내 부 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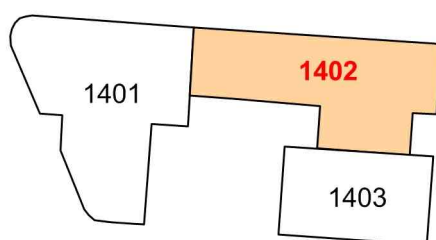


소 재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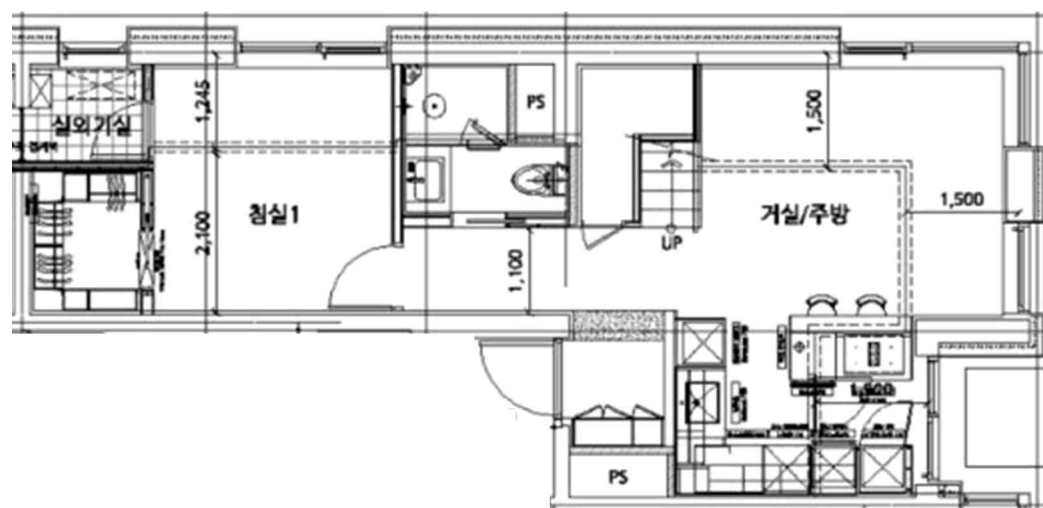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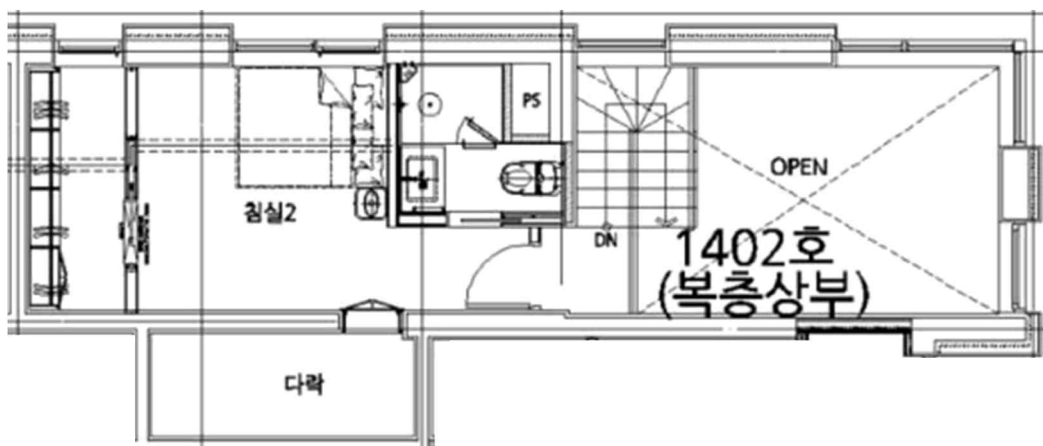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90 삼성브르넨 8층 801호 및 14층 1402호

4

NO SCALE



호별배치도



표준적인 내부구조도

사 진 용 지



주위환경



주위환경

사 진 용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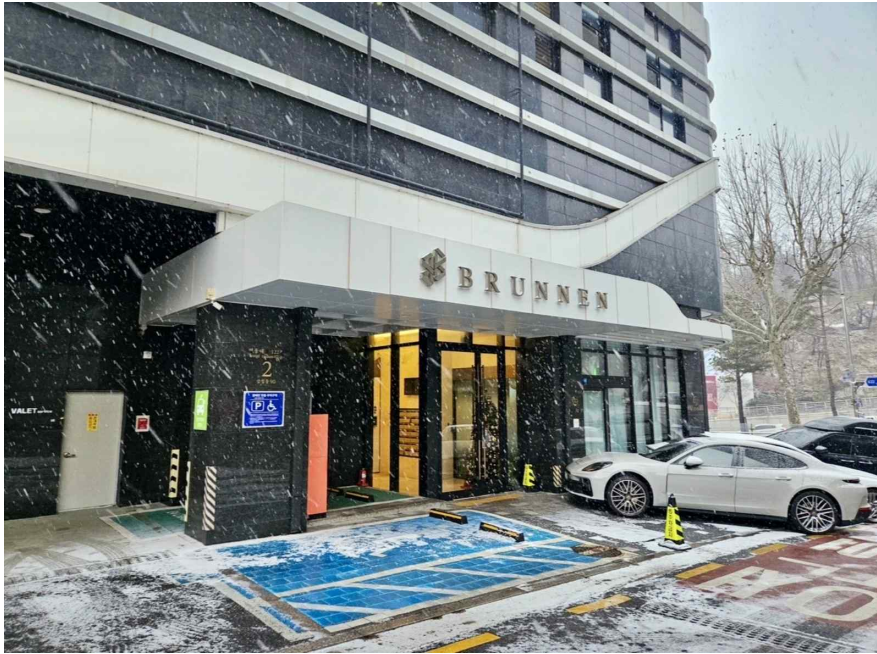


본건 소재 건물 전경



본건 소재 건물 전경

사 진 용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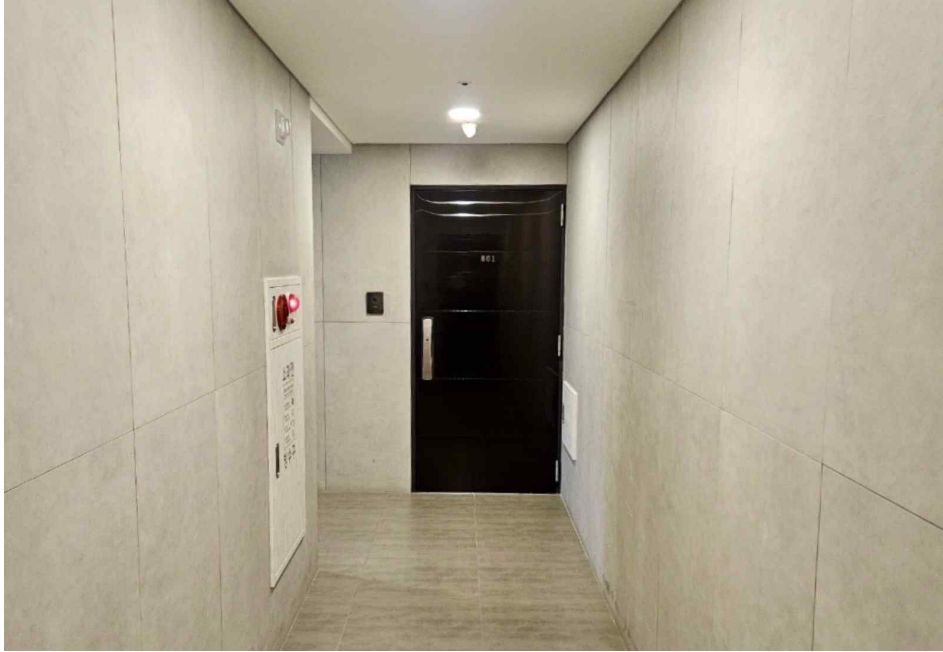


공동 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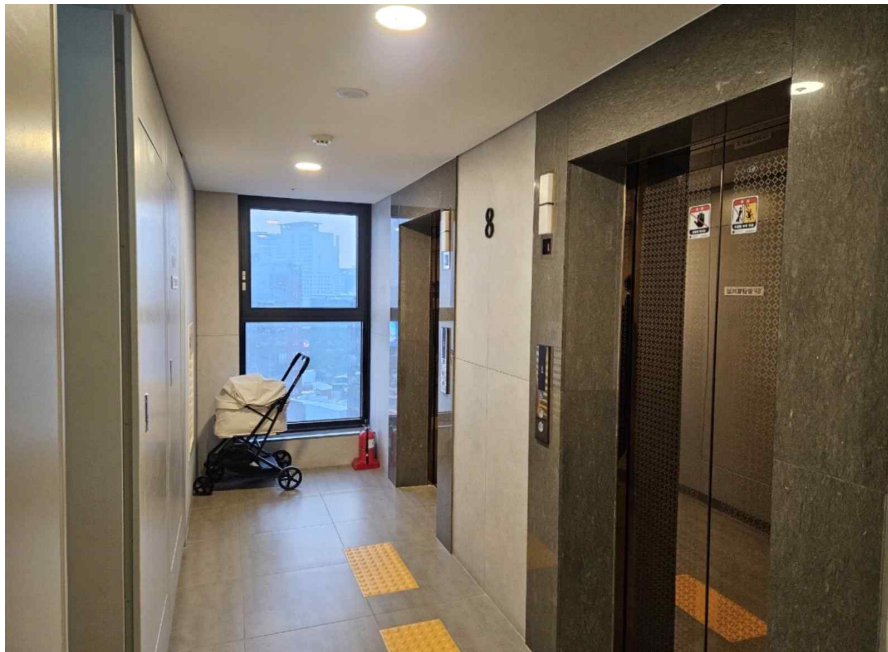


주차장

사 진 용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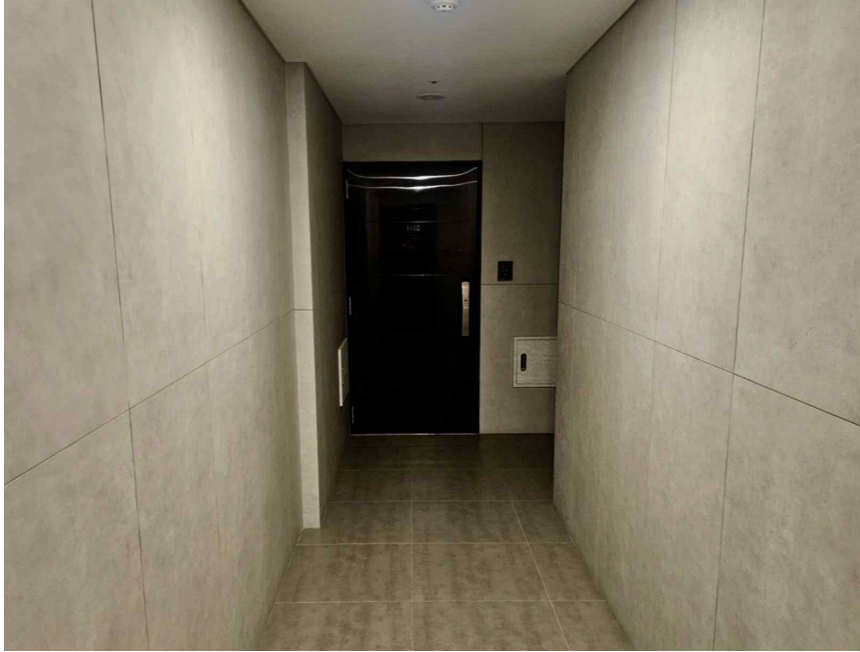


기호1 현관문



제8층 승강기

사 진 용 지



기호2 현관문



제14층 승강기